

□ 질문의원 : 김제광 의원

○ 부천시 인사위원회와 3개 구청 인사위원회가 대부분의 회의를 실질심의 하지 않고 서면심의로 대체하였는데 그 이유와 법적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람.

(답 변)

- 지방공무원법 제8조에 인사위원회의 기능은 공무원 충원계획의사전 의결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와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승진·보직임용 기준의 사전의결 및 승진임용의 사전의결, 임용권자의요구에 의한 공무원 징계의결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서면심의로 대체한 법적 근거와 이유는 지방공무원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며 인사위원회의 회의개최에 있어서는 실질심의와 서면심의 방법이 있음.
- 그러나 모든 안건에 대하여 실질심의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있어 우리시를 포함한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 징계의결 등개인의 신상과 관련한 중요사안에 대하여만 실질심의 하고 있으며,기타 안건에 대하여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심의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근거로 서면심의를 관행화 하고 있는 실정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우리시가 인사위원회를 서면심의로 대체한 것이 마치, 불법·위법된 행위라 주장하며 우리시 인사행정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음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음.
- 그간, 우리시에서는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전국 최초로 다면평가제 실시, 개인별 승진후보자 순위, 경력·교육점수 등을 공개해 왔으며 인사청탁 근절을 위하여 인사청탁자에 대한 불이익처분과 인사 고충상담제 운영을 통하여 최대한 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인사를 실시하고 있음.
- 또한, 승진인사의 경우, 개인별 근무성적(근평), 경력, 다면평가 점수, 실적가점을 토대로 작성한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를 기준하여 승진 임용배수내에서 명부상 순위와 시정발전 유공자, 근무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진임용의 공정성을 기하고 있음을 깊이 인식 하여 주시기 바람.
- 끝으로, 우리시 인사위원회의 실질심사 기능을 강화하여 2천여 공직자가 신뢰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음.

□ 질문의원 : 김제광 의원

○ 부당한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비를 조사해서 회수 및 인사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소사구보건소장의 초과근무수당 지급건에 대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없다고 답변한 사항에 대하여,

(답 변)

- 초과근무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음.
- 부당한 초과근무수당에 대하여는
 - 복무 관리의 1차적 책임은 해당 부서장으로 초과근무수당은 사전 초과근무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 한 후 부서장의 결재후 실시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사실과 다르게 지급된 초과근무 수당이 있는지의 여부는 감사실과 합동 점검 등을 통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부분이 있으면 환수 하겠음.
- 소사구 보건소장의 경우
 - 2005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248쪽)에 의하면 관리업무수당을 지급받는 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하고 있음.
 - 또한, 행정자치부 질의 결과 전임계약직공무원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이 아닌 전임계약직공무원(가~마급)의 경우 일반계약직 공무원 연봉등급 상당계급으로 확정하기는 곤란하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 특히, 관리업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관련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단정하는 것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함.
- 그리고, 소사구 보건소장에게 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서에 있어야 되는데 없이 지급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이며 회계과에 그 예산이 잡혀 있지 않다고 하였는데 사업소의 예산은 사업소에 별도로 편성하게 되어 있는 것이며 소사구 보건소 예산서에 분명히 계약직뭉으로 3,982천원이 편성되어 있음.

□ 질문의원 : 김제광 의원

○ 부천시학교급식지원조례가 급식네트워크팀과 협의만 되면 받아들일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러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

급식조례가 시민들과 호응하는 선에서 연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의 답변을 요구

○ 급식네트워크팀에서 정보공개청구법에 의해서 자료를 요구했을 때 디스켓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제공하지 않은 이유는?

(답 변)

○ 본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 및 구두로 그 간 수차례에 걸쳐 답변을 드렸음에도 동일한 질문을 다시하는 의원님의 저의는 무엇인지 매우 궁금하며 유감스럽게 생각함.

○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의 부당한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동일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한 불요불급한 행정력이 낭비되어 부득이 시간외 근무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임.

○ 다시 한번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오니 잘 검토하시고 인지하시기 바람.

○ 먼저 학교급식네트워크와의 협의 부분은 금회에 상정된 학교급식 지원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2005.11. 7~11.17) 중에 학교급식 네트워크에서 국내생산 문구사용, 완전 무상급식 실시반영, 교육 경비내 지원 문구 삭제 등 3가지 의견을 제시한바 있으나,

- 이는 기존 학교급식네트워크의 주장에 변함이 없고 시의 정책방향에도 맞지 않는 내용으로 반영할 수 없었음.

- 학교급식네트워크의 의견수렴 직후 관계자와 전화통화를 통해

국내생산문구 사용 등에 문제가 있음을 논의하였으며, 행자부 질의응답 내용을 FAX로 보내준바 있음

- 학교급식지원조례는 학교급식법에 근거한 국·도비 지원이 우선되어야 지자체별로 학교급식에 대한 격차 없는 지원이 실현될 것이라 생각되며
 - 학교급식네트워크에서 주장하는 국내생산이나 완전무상급식 문구사용 요구는 실질적인 학교급식 지원을 요구하기 보다는 명분에 너무 치우치고 있다는 생각임.
 - 또한, 학교급식네트워크와 협의만을 요구하는 것은 빠른 시일 내 실질적인 학교급식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보다는 집행부의 입장과 의견은 무시하고 학교급식네트워크 의견만을 들어주려는 편중된 행동이라 할 수 있을 것임.
 - 부천시민들도 학교급식네트워크에서 주장하는 국내생산이나 완전무상급식 문구사용 등 대의 명분보다는 실질적인 급식지원이 조속한 시일에 이루어질 수 있는 조례제정을 원할 것으로 사료 됨.
- 부천시에서도 학교급식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법적, 제도적 틀에서 보다 체계적인 학교급식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음
- 학교급식네트워크에서의 행정정보공개청구는 청구인 명부를 환원 요청한 사항으로, 제출된 서류는 공문서로써 반환할 수 없다고 통보함
 - 또한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 디스켓 자료는 없으며, 공문서에 첨부되어 문서자료관에 보관되어 있으며, 그 자료는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지와 선거권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별도로 생성된 개인별 자료 임
 - 이 자료에는 공개하기 곤란한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선거권이 없는 자, 주민등록번호, 본적)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할 수 없었음.

□ 질문의원 : 김제광 의원

○ 부천시지역정보센터의 정보화에 관련 돼서는

• 공채전형위원회 인원 중에서 제가 봤을 때 명단에 전문가가 단 한명 있었습니다. 정보화전문가를 뽑는 공채전형위원회에서 단 한명의 사람이 전문가가 다른 사람을 대변 할 수 없습니다. 그 전문가를 뽑을 때는 그 전문가 군이 더 많아야 되는 것은 우리 기본상식이기 때문이며,

•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지금 지역정보센터 직원 11명이 단한명이 없더라도 기본운영비만 가지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효율성이 떨어지는 관계로 다 폐쇄하고 전국전에 2, 3개정도의 지역정보센터만 존재할 뿐이고 마치 그런데 지역정보센터에서는 자기 인건비를 받기 위한 자기 수당을 받고 급여를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처럼 보이기 위해서 외부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온다고 하는데 허울이라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면에서도 한 가지 예가 될 수 있으며,

• 이번에 용역기간이 12월 20일부터 2006년 1월 25일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약3천만의 예산은 어디서 생긴 예산인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 변)

○ 정보화전문가를 뽑는 공채전형위원회에서 단 한명의 사람이 전문가가 다른 사람을 대변 할 수 없습니다. 그 전문가를 뽑을 때는 그 전문가 군이 더 많아야 되는 것은 우리 기본상식이라는 위원님의 말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전문가 군은 전산운영 및 전산에 대한 이해능력과 정보화사업의

이해능력을 갖춘 사람 군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함.

- 전자가 기술적인 측면이고 후자가 조직관리 및 사업관리 능력이라면, 한 조직의 장은 운영기술과 개별사업 수행능력 보다는 조직관리 능력과 환경 분석능력, 전략적 의사결정 능력 등이 더 필요하므로 운영기술 전문가의 공채전형 위원의 참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
 - 그래서 이해관계가 있는 시의회, 시 담당국장, 정보화전문가, 부천 지역정보센터를 대표하며 각 분야에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정윤종 행정 복지위원장, 이상훈 총무국장, 정보화전문가 박호인 부천대 교수, 이재진 지역정보센터 이사를 전형위원으로 위촉하게 된 것임.
 - 이번 사무국장 공채모집에는 총20명이 접수되어 우선 자격 미달자로 판명된 12명을 제외한 8명에 대하여 서류심사로 3명을 뽑아서 최종 면접을 통해 사무국장 전형절차를 거쳤음.
 -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무국장은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 군에 의한 세심한 전형보다는 지역정보센터의 운영전반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책임자를 전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면접과정에서 정보화 전문지식과 경영능력을 고루 갖추었다고 판단된 현 사무국장을 채용하게 된 것임.
-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지금 지역정보센터 직원 11명이 단 한명이 없더라도 기본운영비만 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 지역정보센터 직원 11명이 없더라도 정보통신과 직원 1명이 기본운영비를 가지고 외주주고 관리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답변 드린다면
- 지역정보센터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지적받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평가에 의한 조직진단 및 업무분석 등을 통해 쉽게 진단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렇다고 의원님께서 주장하신 대로 업무분석 없이 정보통신과로 통합하여 외주주고 직원

이 관리하기 또한 쉽지 않으므로 향후 센터의 운영방향 모색을 위해 부득이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조직진단과 업무량 성과분석 등 용역을 실시하여 지역정보센터의 조직 및 운영방향을 재정립 하고자함.

-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효율성이 떨어지는 관계로 다 폐쇄하고 전국에 2,3개 정도의 지역정보센터만 존재할 뿐이고 마치 그런데 지역정보센터에서는 자기 인건비나 수당을 받기 위한 수단처럼 보이기 위해 외부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온다고 하는데 허울이라고 생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 효율성이 떨어져 폐쇄한 것이 아니라,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정통부(산하 체신청)가 지원하고 민간(대학, 공공기업 등)이 주도한 전국 45개의 지역정보센터는 1998년 이후 지역정보화 추진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오면서 예산지원 등의 문제로 2000년 전후로 대부분 없어지거나 산하기관에 통합되었으며 부천지역정보센터는 문화 및 생활, 산업의 지역정보를 담당하여 왔음.
 - 벤치마킹에 대하여는 2005년도에 지역정보센터 운영과 센터에서 구축한 평생학습센터 정보망, 구축방법, 운영 등에 관하여 청주시외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로 벤치마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오해 없으시기 바람.

- 그리고 용역비 3천만원이 어디에서 생긴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음.
 - 센터 운영방향의 재정립이 대두되어 용역의 시기로는 현 시점이 최적 기로 판단됨에 따라 2005년 부천N구축 사업비중 일부를 전용하여 용역을 실시하게 되었음.